- 부산광역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3. 12. 18. - - - - - - - - - - - - -최광렬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3.12.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재근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03.7.18)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 지급 경비 기준이 개정되어 2004.1.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550,000원 이내 ⇒ 월 900,000원 이내)
- 보조활동비 신설(월 200,000원 이내)

○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일부 개정(숙박비-별표1)
- 의장·부의장(1야당 41,000원 ⇒ 1야당 46,000원)
- 의원(1야당 22,000원 ⇒ 1야당 25,000원)

○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일부 개정(숙박비-별표2)
- 의장·부의장(1야당 가등급 151⇒166, 나등급 109⇒120, 다등급 84⇒92, 라등급 72⇒ 79)
- 의원(1야당 가등급 132⇒145, 나등급 86⇒95, 다등급 64⇒70, 라등급 56⇒6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명예직 규정의 삭제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 경비등을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인상액을 반영 현실화하여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